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25년 2월 13일  
행정재경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5년 1월 23일, 도병두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25년 1월 23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5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최 중  
제1차 행정재경위원회(2025년 2월 13일)
 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- 가. 제안이유
  - 자치회관 운영 원칙의 적용기준을 법령에 부합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함.
- 나. 주요내용
  - 자치회관 운영 원칙 중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에 대한 예외규정 신설 (안 제3조제4호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박병규

나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자치회관 운영 원칙의 적용기준을 「공직선거법」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
  - 안 제3조제4호에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운영원칙)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. 1. ~ 3. (생략) 4. <u>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</u>  5. (생략)	제3조(운영원칙) ----- -----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<u>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. 다만, 「공직                      선거법」 제111조에 명시된 의정보고회                      및 같은 법 제141조에 따른 당원집회는                      예외로 한다.</u> 5. (현행과 같음)

- 현행 공직선거법 제111조(의정활동 보고)에서는 의정보고회를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만 제한하고 있으나, 이외의 기간에는 특별히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,
- 「공직선거법」 제141조는 정당이 주민회관·체육관 또는 문화원 기타 다수인이 모일 수 있는 시설이나 장소를 당원집회의 장소로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.<sup>1)</sup>

1) 제141조(당원집회의 제한) ③「정치자금법」 제27조(보조금의 배분)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(제53조(공무원등의 입후보)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규정된 기관을 포함한다)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주민회관·체육관 또는 문화원 기타 다수인이 모일 수 있는 시설이나 장소를 당원집회의 장소로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설의 손괴 또는 전력의 사용 등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 때에는 당해 정당이 보상하여야 한다.

- 현행 조례에서 ‘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’의 원래 목적은 주민자치 위원회  
정치적 중립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고 대관 여부는 상위법령인 「공직선거법」  
에서 허용되고 있으니 해석에 따라 오해의 여지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헌법  
과 법령, 조례로 체계화된 법질서의 통일성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적 조치로  
생각됨.
- 2025. 1. 20 현재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를 규정하고 있는 23개 자치  
구에서 의정보고회는 4개구가 당원집회는 1개구가 단서로 가능함을 규정하  
고 있음.(붙임2 참조)
- 집행부에서는 대관시 주민자치회관 이용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정치적  
중립 의무 위반의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소지를 차단할 방안에 대한  
고민이 필요해 보임.
- 본 제정안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 
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**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**

**5. 토론요지 : 생략**

**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**

**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**

## 붙임 2

## 자치회관 운영원칙 조례 규정 현황

【규정 ○, 미규정 ×】

(2025.01.20. 기준)

자치구	조례에 명시적으로 '정치적 이용목적 배제'를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	단서로 아래사항을 예외적으로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		비고
		의정보고회	당원집회	
총계	규정 23개구, 미규정 2개구	규정 4개구	규정 1개구	
강남구	×			
강동구	○	×	×	금천과 같음
강북구	○	○	○	2024.09.27. 개정
강서구	×			
관악구	○	×	×	금천과 같음
광진구	○	×	×	금천과 같음
구로구	○	×	×	금천과 같음
금천구	○	×	×	
노원구	○	×	×	금천과 같음
도봉구	○	×	×	금천과 같음
동대문구	○	×	×	금천과 같음
동작구	○	×	×	금천과 같음
마포구	○	○	×	2015.04.16. 개정
서대문구	○	○	×	2024.10.16. 개정
서초구	○	×	×	금천과 같음
성동구	○	×	×	금천과 같음
성북구	○	×	×	금천과 같음
송파구	○	×	×	금천과 같음
양천구	○	×	×	금천과 같음
영등포구	○	○	×	2014.04.24. 개정
용산구	○	×	×	금천과 같음
은평구	○	×	×	금천과 같음
종로구	○	×	×	금천과 같음
중구	○	×	×	금천과 같음
중랑구	○	×	×	금천과 같음